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김♦♦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4. 김♦♦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

- 1. 원고에게,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
 -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 중,
 - 가. 피고1 김◇◇은 3/9 지분에 관하여
 - 나. 피고2 김◇◇는 2/9 지분에 관하여
 - 다. 피고3 김◇◇는 2/9 지분에 관하여
 - 라. 피고4 김◇◇은 2/9 지분에 관하여

20○○. ○. ○. 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●●●가 건축하여 소외 ◆◆◆에게 20 ○○. ○. 분양을 한 것이고, 당시 소외 ◆◆◆는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소외 망 ●●●에게 ○○○원을 차용하면서(약속어음을 발행해줌)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○○○원, 채무자 소외 ◆◆◆, 근저당권자 소외 망 ●●●으로하는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.
- 2. 그 뒤 소외 ◆◆◆는 소외 망 ●●●에게 20○○. ○. ○. ○○○원, 같은 해
 ○. ○. ○○○원, 같은 해 ○. ○. ○○○원, 합계 ○○○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소외 망 ●●●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.
- 3. 그리고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◆◆◆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○. ○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 그런데 20○○. ○. ○. 소외 망 ◎ ◎●는 사망하였고 위 피고들은 소외 망 ◎●◎의 상속인들입니다.
- 4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○○등 기소 20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그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www.kloc.or.krf (400m) krf (400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

(단, 2007.12.31.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
1.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
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)

1. 갑 제4호증 약속어음

1.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영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4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대 157.4m²
- 1. 위 지상
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
 1층 74.82㎡
 2층 74.82㎡

지층 97.89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kgc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